

서울특별시 성북구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(안)
심사보고서

2015. 12. 14(월)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. 11. 18. 성북구청장 발의(의안번호 131호)
- 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19.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5. 11. 23.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)

가. 제안이유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(이하 “법”) 제2조에서 규정한 ‘위기상황’의 사유 외에,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‘위기상황’의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(개정 2014.12.30.) 하였는바 이에 따른 ‘위기상황’의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‘위기상황’, ‘긴급지원’, ‘지원대상자’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 규정(안 제3조)
- 지원 내용, 방법, 절차 등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적용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황규설)

-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위기상황의 사유 외에, 법 제2조 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(2014.12.30.개정) 하였는바, 이에 위기상황 등을 구민이 알기 쉽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,
-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는 ‘긴급지원’, ‘지원대상자’ 등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에는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였으며, 안제4조에는 지원내용, 방법, 절차 등을 ‘긴급복지지원법’을 적용토록 하고있습니다.
- 본 조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위기가정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여겨집니다.
-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,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예산조치 : 없음

○ 2015. 9. 24 ~ 10. 14.